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-119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11. 15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 
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

- 명칭 변경 : 성별영향분석평가 → 성별영향평가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성별영향평가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8. 10. 11. ~ 10. 31. (제출의견 없음)

2)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: 원안 동의

3) 자치법규 성별영향 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8. 11. 15.)
- 5)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6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”을 “「성별영향평가법」”으로, “성별영향분석평가에”를 “성별영향평가에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”를 ““성별영향평가””로, “분석평가하여”를 “평가하여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(이하 “분석평가”라 한다)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분석평가함”을 “성별영향평가함”으로, “분석평가를”을 “성별영향평가를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분석평가의 실시”를 “성별영향평가의 실시”로 한다.

제6조 제목 “(분석평가 대상)”을 “(성별영향평가 대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”을 “「성별영향평가

법」”으로, “분석평가의”를 “성별영향평가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분석평가 대상으로 요청 한”을 “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요청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7조 제목 “(분석평가의 실시)”를 “(성별영향평가의 실시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조례·규칙심 의회”를 “조례·규칙심의회”로 한다.

제8조 제목 “(분석평가의 고려사항)”을 “(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분석평가결과”를 “성별영향평가결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9조 제목 “(분석평가서의 작성)”을 “(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, “분석평가서”를 “성별영향평가서”로 한다.

제10조 제목 “(분석평가결과의 반영)”을 “(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11조 제목 “(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)”을 “(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특정성별영향평가”로, “분석평가의”를 “성별영향평가의”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”를 “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”로 한다.

제12조 제목 “(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”을 “(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, “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”를 “마포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분석평가”를 각각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분석평가결과”를 “성별영향평가결과”로, “관한사항”을 “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3호 중 “부진하여위원”을 “부진하여 위원”으로 한다.

제17조 본문 중 “수당 과”를 “수당과”로 한다.

제18조 제목 “(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”를 “(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, 같은 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분석평가책임관”을 각각 “성별영향평가책임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분석평가서”를 “성별영향평가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, “분석평가에관한사항”을 “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 제목 “(분석평가 교육)”을 “(성별영향평가 교육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분석평가의”를 “성별영향평가의”로, “분석평가에”를 “성별영향평가에”로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”를 ““성별영향평가””로 한다.

제11조 제목 “(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분석 활성화)”를 “(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분석 활성화)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 <u>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성별영향분석평가법</u>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수립·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"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<u>분석평가</u>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(생 략)</p> 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(생 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 <u>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성별영향평가법</u>」----- -----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에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"<u>성별영향평가</u>"----- ----- ----- <u>평가</u>하 여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(현행과</p>

②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(이하 "분석평가"라 한다)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극적 조치)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·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

제6조(분석평가 대상) ① 구청장은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(이하 "대상 정책"

같음)

② ----- 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4조(적극적 조치) -----  
----- 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 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  
-----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##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

제6조(성별영향평가 대상) ① ---  
- 「성별영향평가법」-----  
-----  
- 성별영향평가의-----  
-----



이라 한다)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분석평가 대상으로 요청한 정책 및 사업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·규칙·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7조(분석평가의 실시)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. 다만,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성별영향평가  
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  
대상으로 요청한 -----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 
-----  
----- 성별영향평가 -----  
-----

제7조(성별영향평가의 실시) ---  
-----  
----- 성별영  
향평가-----  
-----  
-----

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.

1.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: 조례·규칙심의회의 심의·의결 전

2. ~ 4. (생략)

제8조(분석평가의 고려사항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3.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

4.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
제9조(분석평가서의 작성)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0조(분석평가결과의 반영)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,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

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  
조례·규칙심의회-----  
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)  
-----  
----- 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성별영향평가결과-----  
-----

4. ----- 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

제9조(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) --  
- 성별영향평가를 -----  
----- 성별영향평가서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)  
----- 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(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) 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대하여, 구청장은 통보받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

제12조(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
3.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성인지 예산서의

제11조(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) ① ----- 특정성별영향평가 ----- 성별영향평가의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

제12조(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성별영향평가 -----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-----

② -----

1. 성별영향평가 -----
2. 성별영향평가 -----
3. 성별영향평가결과 -----

연계에 관한사항

4. (생략)

제1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 과장, 사업부서 과장 중 1명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- 1. (생략)
- 2. 그 밖에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(생략)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.

제16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3.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

----- 관한 사항

4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성별영향평가 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----- 성별영향평가 -----  
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 
-----  
----- 성별영향평가 -----  
-----.

제16조(위원의 해촉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

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7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8조(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 본청 복지교육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2.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
3.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4. 제10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, 성인지 예산서 및 기

-----  
- 부진하여 위원-----  
-----  
-----

제17조(수당 등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---  
-- 수당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18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-- 성별영향평가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--- 성별영향평가책임관-----  
-----  
-----

② ----- 성별영향평가책임관-----  
-----  
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  
-----

3. ----- 성별영향평가서-----  
-----  
-----

4. ----- 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  
-----

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

5. 제19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·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

제19조(분석평가 교육)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----

5. ----- 성별영향평가  
-----

6. ----- 성별영향평가 -----  
-----  
---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
항

제19조(성별영향평가 교육) -----  
--- 성별영향평가의 -----  
----- 성  
별영향평가에 -----  
-----.

**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」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**4. 작성자**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송강미
연 락 처	02-3153-8922